

금융

우체국예금

목차

- 제1절 예금계약의 성립
- 제2절 예금의 상속
- 제3절 금융요원의 면책범위와 주의의무
- 제4절 예금의 강제집행
- 제5절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제6절 우체국예금의 특징
- 제7절 우체국의 고객우대제도
- 제8절 요구불예금
- 제9절 정기성예금
- 제10절 적립식예금

제1절 예금계약의 성립

1. 예금계약의 의의 및 계약설

가. 예금계약의 의의

예금계약이란 금전의 보관과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와 예금을 수입운용한 후 이것을 환급할 것을 약정하는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채권계약이다.

나. 예금계약의 성립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로 성립하는 계약인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예금주의 의사가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통설에 따라 소비임치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낙성계약(諾成契約) :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0원 통장)

2. 예금의 성립시기

<사례>
 고객이 예금통장과 입금할 현금을 우체국 카운터에 올려둔 채 응접쇼파에 앉아 있다가 와서 보니 예금은 접수되지 않고 통장과 현금은 없어졌다. 고객은 우체국창구에 놓아 두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Q. 위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될까요?

가. 현금입금의 경우

담당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인도받아 금액확인을 마치면 예금통장을 작성해 교부하지 않았거나 전자입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우체국예금 거래약관 제7조1항』

나. 유가증권 입금의 경우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우체국이 그 증권을 어음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간이 지나고 결제

를 확인한 때.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의 경우 결제를 확인한 때”라고 하여 추심위임설(推尋委任設)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타은행 자기앞수표의 즉시 지급 요청시 : 결제를 확인(지급)한 때

다. 현금자동 입출금기기에 의한 입금의 경우

고객이 기기조작 후 기기가 나타난 금액에 대하여 확인 버튼을 누른 때에 예금이 되어 그 반환채권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점외 수금일 경우

수금하는 직원에게 예금수령권한(보증보험 가입유무)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이 현금을 수령한 때에 예금반환채무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으나, 예금수령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령한 현금을 영업점포에 가지고 와서 예금수령 권한이 있는 직원에게 넘겨준 때에 예금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예금의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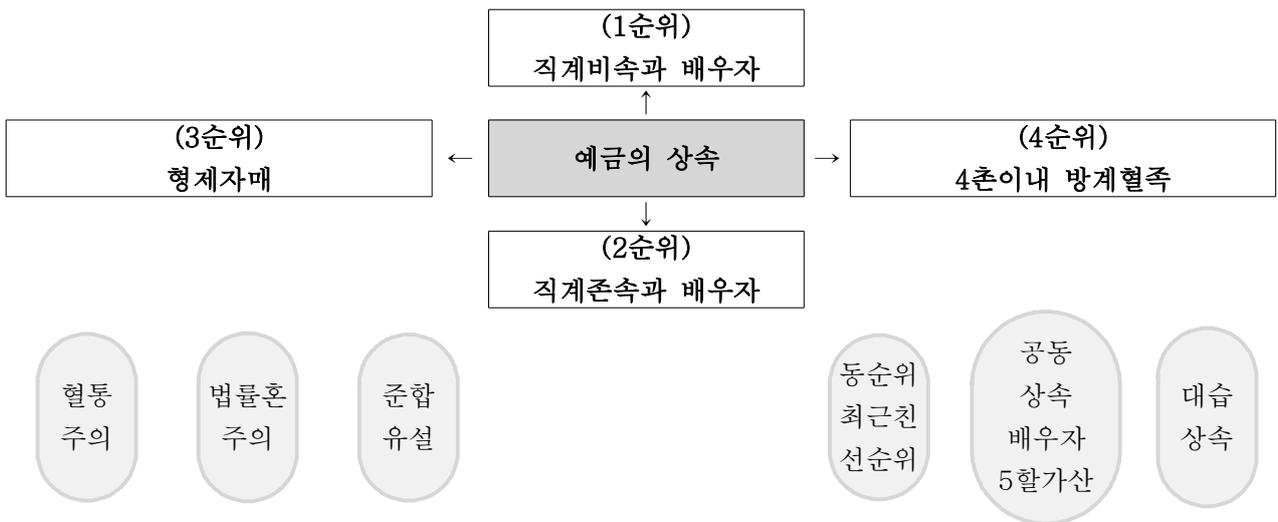
<사례>
 결혼3년차인 가정주부 A씨는 얼마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편은 우체국에 정기예금을 3천만원 예치하고 있었다. 부인은 현재 임신7개월로 남편과의 사이에는 다른 자녀가 없으며, 시부모님은 두분 다 생존해 계신다.
 Q. 위 경우 남편의 예금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1. 예금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예금주가 사망하면 법률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이전된다.

2. 상속의 우선순위

가. 유언에 의한 상속

나. 법정상속순위(순위별 순차적 적용, 최근친 우선적용)



3. 상속예금의 지급처리

가.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예금을 지급청구 시

- ◆ 호적관계서류,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인감, 연서한 손해담보각서

나.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상속예금을 지급청구 시

- ◆ 호적관계서류, 공동상속인이 대표자에게 상속예금을 위임하는 위임장, 연서한 손해담보각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
- ◆ 위임장에 공동상속인 전원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징구

다. 100만원이하 소액 상속예금을 지급청구시

- ◆ 공동상속인중 1인이 청구가능
- ◆ 호적관계서류, 인감증명서, 소액상속대표청구각서, 인감증명서, 인감

제3절 금융요원의 면책범위와 주의의무

1. 금융요원의 면책범위

가. 면책의 근거

- ◆ 우체국예금 거래약관 제16조 [면책범위]:최우선적용
- ◆ 채권의 주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민법 470조)
- ◆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규정(민법 471조)
- ◆ 상관습

2. 금융요원의 주의 의무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우체국예금 거래약관 제16조 제4항)

나. 상당한 주의 의무

『...예금 지급시 인감의 대조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란 은행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직무상 필요로 하는 일반인보다 높은 충분한 주의”를 말한다.』(대법원 판례 1992.2.14)

다. 저축성예금의 중도해약시 금융요원의 주의의무 가중

저축성예금은 원칙적으로 만기일까지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중도해약의 청구에 응할 수 있을 뿐이므로 예금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가중된 주의 의무가 필요할 것이다.

※면책약관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예금 청구자가 예금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등 예금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이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4절 예금의 강제집행

1.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가. 압류명령

- ◆ 의의 : 우체국으로 하여금 예금주에게 지급을 금지시키고, 예금주에 대하여도 예금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
- ◆ 효력발생시기 : 검찰청에 송달된 시점

나. 추심명령

- ◆ 의의 :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우체국에 당해 예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원의 명령
- ◆ 추심채권자가 압류예금을 직접 추심 후 법원에 추심 신고하여 또 다른 채권자 등 배당요구자와 균등 배당, 배당 완료 후 추심명령 종료

다. 전부명령

- ◆ 의의 :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을 갖는 집행법원의 명령
- ◆ 전부채권자는 독점적 만족을 얻는 대신, 명령의 효력발생과 채권의 변제완료, 그 채권에 부착된 조건 또는 항변 등 위험부담

※예금 채권가압류(압류 및 추심명령)처리시 장래의 예금채권에 미치는 범위

☞ '장래 또는 향후(추후)에 입금되는 "문구가 없는 경우 : 장래 효력 없음

(송달당시 현재의 잔액에만 효력이 미침 :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등**)

☞ '장래 또는 향후(추후)에 입금되는 "문구가 있는 경우 : 장래 효력 있음

(송달당시 현재의 잔액이 아닌 압류금액에 이를 때까지 효력이 미친다.)

2.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집행

가. 의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금주의 조세 체납 시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 예금의 처분과 지급을 금하는 것

나. 법원의 압류와 국세체납압류의 차이

- ◆ 별도의 추심명령 절차 없이 압류망으로 추심 가능
- ◆ 압류금액은 압류송달시점의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침

※우체국예금 압류순서

☞ 요구불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비과세예금→기타예금

※압류예금 지급시기 및 금액

☞ 지급시기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압류채권자의 지급청구 시
- ◆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 : 예금의 만기일 이후

☞ 지급금액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예금채권의 원금에 대한 압류금액
- ◆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 :
 - 압류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압류권자에게
 - 압류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예금주에게 지급한다.

제5절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1. 금융실명거래

<사례>

유량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한집에 살고 있는 삼촌은 유량의 입학선물로 우체국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삼촌은 본인의 신분증이라 주민등록등본(유량이 가족과 삼촌이 등재)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삼촌은 유량의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

Q. 왜 삼촌은 유량의 통장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가. 목적

- ◆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1997.12.31)

나. 실명확인증표

- ◆ 대상 : 개인, 법인, 임의단체
- ◆ 실명확인 생략 가능거래(시행령 제4조 1항)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
 -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 100만원 이하의 송금(무통장 입금 포함)

2.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거래처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비밀보장의 의무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되어 있어 예금·적금 등에 관한 비밀보장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며 예금 잔액조회에 있어서도 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나. 비밀보장의 내용

1) 정보제공 또는 누서금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예금거래 내용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및 누설 하여서는 아니됨

2)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실명법 제4조 제1항)

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과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라) 동일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제공

마)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부당한 정보제공요구의 예

가) 정보제공요구 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제공 요구

나) 정보제공요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 특정점포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단, 일부 경우 일괄조회가능)

※표준 양식 : 금융거래의 제공요구서, 법원의 제출명령, 압수수색검증영장

다. 정보제공 사실 등의 기록·관리 의무

- ◆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 또는 실명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법4조2에 의거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제6절 우체국예금의 특징

1. 우체국 예금의 개념

우체국을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저축수단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우체국예금의 특성

우체국예금은 그 경영주체가 국가이므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우체국 예금으로 예입된 예금의 원금과 이자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3. 타 금융기관과의 차이점

가. **국가기관이 취급** : 우체국예금은 국가기관이 취급함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하여 운용되며 법령, 예산 등의 통제를 받는다.

나. **특별법에 의함** : 타 금융기관의 예금이 일반법인 민·상법에 의하여 취급되는데 비해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급되며 이의 적용을 받는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따라서 소멸시효 및 무능력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는 달리 특별 규정이 있다.

다. **예금의 종류 및 이자율 결정의 독자성** : 우체국예금의 종류 및 이자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서 이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10조)

라. **자금운용의 특이성** : 타 금융기관의 운용방법은 예치된 자금을 자금의 수요자에게 융자하여 주는 여신업무(대출)에 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데 비하여 우체국예금은 타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증권매입 및 법에서 정한 주식의 매입 등에 의하여 자금을 운용한다.(법제18조)

마. **보편적 서비스**

우체국금융상품 중 고객맞춤형 재테크 상품에 대해서 다 함께 살펴볼까요?(2007년 자료)

1. 언제 어디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 보통/저축예금, e-postbank예금, 듬뿍우대저축, 웰빙우대저축예금

2. 여유 돈 운영에 적합한 상품은?

☞ 정기예금, 챔피언 정기예금, I-card 정기예금, EverRich 회전식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3. 목돈마련에 적합한 상품은?

☞ 정기적금, 이웃사랑 자유적금, 가계우대 정기적금, EverRich 자유적금

4. 절세상품으로 적합한 상품은?

☞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 생계형 저축

5.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

☞ 챔피언정기예금, EverRich 자유적금, EverRich 회전식 정기예금

6. 도시주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금융혜택이 적은 농어촌 지역주민에게도 고수익 금융상품 가입 기회를 부여하여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상품은 무엇인가요?

☞ 주가지수연계 정기예금 : 예금만기 시 원금 100%를 보장하면서 주가지수(KOSPI 200)의 상승 또는 하락 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

※KOSPI 200지수 : 증권거래소시장의 대표적인 200개 종목의 주가지수로 산출 하는 지수로서 변동률은 종합주가지수(KOSPI)와 비슷함

4.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 ◆ 특징 : 각 금융기관저축을 계좌수에 관계없이 한도금액내로 가입 한 경우 가입당시 세금우대 신청시 적용(1인 다금융기관 다계좌 가입 가능)
- ◆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한 20세이상 거주자(개인)
- ◆ 대상예금 : 1년이사 거치식(정기성)또는 적립식 모든예금
- ◆ 한도금액 : 저축원금이 1인당 4천만원이하(노인(남60세, 여 55세이상)·장애인6,000만원이하)
- ◆ 원천징수 : 이자소득에 대하여 9.5%(소득세 9%, 농어촌특별세 0.5%)
▷일반세율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소득세 14%, 주민세 1.4%)

제7절 우체국의 고객우대제도 (2008.1월 자료)

<사례>

민간은행에서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수료나 커미션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부유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1'관계에서 고액 고객의 자산관리 및 증권거래 정보, 부동산투자정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PB(Private Bank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PB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우체국에서는 우수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을까요?

1. EverRich 고객우대제도

가. Royal-family제도

- 1) 고객등급 산정시 세대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주세대원 실적에 반영
- 2) 세대구성을 희망하는 개인고객에 한하여 적용
- 3) 세대구성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4) 실적합산 결과 주세대원이 최우수고객으로 선정 시 각종 혜택 부여

나. 최우수고객과 우수고객제도

구분		최우수고객제도	우수고객제도
선정대상		개인 및 모든 법인(금융기관 제외)	
선정기준	개인	총점 100점 이상이 고객	총점 60점 이상 100점 미만고객
	법인	3개월 수신고평균 10억이상	3개월 수신고 평균 5억이상 10억미만
선정주기		매월초 선정	
선정 및 서비스 개시 시기		매월말 기준 매월초에 선정 선정월 15일부터 서비스 개시	
우체국별 해당고객 통보		서비스개시일 전일(14일)까지	
서비스 기간		6개월	
개인고객 통보방법		통장에 인자 인터넷뱅킹 로그인화면에 인자 CD/ATM기 이용시 명세표에 인자	
개인고객 판서 추천		4급국당 5명 서비스기간 5급국당 3명 : 3개월	-
개인고객 전담제		우체국 전담관리자 (창구유도)	우체국 자체관리 콜센터 관리(향후검토)
서비스내 용	금리	개인고객 우대금리 적용 (0.05~0.15%, 단 6개월이상)	-
	수수료	각종 수수료 면제	각종 수수료 50%감면

다. 최우수고객 전담제도

- 1) 고객별 대표유지국에 최우수고객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최우수고객을 전담관리자(총괄국 금융팀장, 소속국 국장)에게 자동할당하여 관리토록 함

- 2) 관리우체국에 최우수 고객 관련 각종 정보제공
- 3) 고객차별화를 통한 최우수고객 이탈방지 및 고객정보의 현행관리

라. 최우수고객 관서 추천제

- 1) 최우수고객은 아니지만 우체국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 각 우체국의 추천을 받아 총괄국에서 승인후 관리
- 2) 승인대상 : 4급총괄국 최대 5명, 5급총괄국 최대 3명
- 3) 서비스기간 : 3개월

2. 우체국예금 전결(우대)제도

가.의의

관서장이 자체권한 또는 본부의 승인을 얻어 기본고시금리에 덧붙여 일정한도내에서 가산해 줄 수 있는 우대금리를 말하며 금리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우수고객 및 고액예금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

나.전결금리의 종류

- 1) 우체국장 전결금리
전결금리 적용대상 예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0.2%(1년금리기준)범위내에서 당해 우체국장의 재량하에 지급할 수 있는 우대금리(0.01%단위 적용)
- 2) 본부장 전결금리
전결금리 적용대상 예금을 가입하는 고객중 10억이상의 고액 가입고객에 대하여 1.0%(1년금리기준)범위내에서 본부장이 승인하여 지급 할 수 있는 우대금리(0.01%단위 적용)
- 3) 고액예금자 우체국장 우대금리
 - ◆ 대상 : 1천만원 이상 10억미만 (I-Card 정기예금 :2백만원 이상)
 - ◆ 우대금리 : 0.4%이내(우체국장 전결금리 0.2% 포함)

다. 적용대상 고객 : 개인, 법인 및 임의 단체

라. 적용대상예금 : 정기예금(챔피언, 생계형, I-Card, 회전식)

※최우수 고객이 해당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우수 고객 우대금리와 전결(우대)금리 각각 적용

제8절 요구불 예금 (2008년 1월 자료)

1. 요구불예금의 종류

종별	가입대상	주요특징	사용통장
보통예금	개인 법인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제한없음 ◆ 모임, 공공자금 운영편리(단체, 법인) ◆ 카드(개인)발급, 전자금융, 자동이체 	수시입출식
저축예금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수표약정(1인 1계좌 가입) 	수시입출식
듬뿍우대저축(MMDA)	개인 법인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치금액별 금리 차등적용 -최초입금액 : 개인 500만원, 법인 5천만원 ◆ 매일예금잔액에 대하여 이자계산 ◆ 카드(개인)발급, 전자금융 자동이체 	수시입출식
e-Postbank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미 교부(기타 저축예금 동일) ◆ 무통장거래 건수 제한 없음 ◆ 카드(개인)발급, 전자금융의 자동이체 ◆ 저축예금에서 전환가능 ◆ 신규가입, 계약해지는 창구만 가능 ◆ 가계수표 약정 가능 	통장 미사용 (자동화 채널)

우체국 MMDA(Money Marker Deposit Account)와 투신사의 MMF(단기금융상품)와의 차이점은?

MMDA : 1982년 미국은행이 MMF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고금리 저축성예금으로 실적배당상품과 같이 시장금리를 지급하면서 인출 및 이체도 자유로우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따라 1997년 7월 시중은행에서 신상품으로 발매가 허용되었다.

※우체국 이자지급기준 : 개인은 1일이라도 법인 및 단체는 7일 이상 유치분

※기관의 대기성 단기자금 유치에 용의(상품특징 : 위 표 참조)

☞MMF : 고객의 돈을 모아 금리가 높은 CP, CD,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임

제 9절 정기성 예금 (2008년 1월 자료)

1. 정기예금

가. 특징

- 1)이용대상자 : 개인, 법인, 임의단체 등 무제한
- 2)이자지급방법 : 월이자 지급식, 만기일시 지급식
- 3)가입기간 : 30일, 3월, 6월, 1년,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 4)가입금액 : 최저 10,000원이상 1원단위(최고 제한 없음)
 ※예치금액 중 수표에 의한 입금액의 부도지급시에는 정기예금을 해약처리한다.
- 5) 세금우대적용
- 6) 이자계산 및 지급
 - 가) 만기해약 : 약정이율
 - ※ 만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은 만기이율 적용
 - ◆ 일반정기예금의 예치기간을 월로 정하였을 경우
 -지급이자 = 예치금액 × 약정이율(연) × 예치기간/12
 - ◆ 일반정기예금의 예치기간을 년으로 정하였을 경우
 -지급이자 = 예치금액 × 약정이율(연)
 - 나) 중도해약 :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예금이자율표 참조)
 - 다) 만기 후 이율
 - ◆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해당 예금 계약기간별 고시이율의 1/2
 - ◆ 6개월 이후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이율

제10절 적립식 예금

1. 정기적금

가. 의의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납입하면 기간 만료시 약정된 계약금액(납입액+발생이자)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목돈마련 상품이다.

나. 특징

- 1)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함
 - ☞ 납입정일 : 월부금을 매월 납입하는 일로서 계약일로부터 월말까지의 일자 중 지정가능
- 2) 계약액 : 1만원이상 1원단위로 하며 최고한도액은 제한이 없음
- 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가입시 세금우대저축 잔액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신청이 가능

다. 이자계산 및 지급

- 1) 만기해약 : 약정이율
 - ※ 이연만기일 ;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자가 납입의 지연이 있을 경우 지연한 일수에 대하여 다시 산정된 만기일
 - ※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은 만기이율 적용
- 2) 만기도래전 지급 : 약정지급이자액에서 만기도래전 지급 차감이자를 공제
 - ☞ 만기도래전 차감이자 : $\text{계약액} \times \{(\text{약정이율} + 2\%) \times \text{차감일수} / 365\}$
- 3) 중도해약지급 :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 4) 만기 후 지급 : 기간별 막니 후 해지 이율
 - ※ 만기도래 전 지급이란?
 - ① 약정만기일이 지나고 전회차 월부금을 납입하였으나 납입이 지연되어 이연만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 ② 전회차 월부금을 납입 후 약정만기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 중도해지와 만기도래전 계산 중 이율이 더 많은 부분을 적용

참고자료

(2008.1월 자료임)

-목차-

- 1. 우체국금융 소개
- 2. 우체국예금 장점
- 3. 등백 우대저축예금(MMDA)
- 4. 고객우대제도
- 5. 제휴업무현황

1. 우체국 금융 소개

	예금	보험	환대체	제휴업무
취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업무 ◆ 타 금융기관과 제휴한 대출업무 ◆ 전자금융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등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환 ◆ 경조금배달서비스 ◆ 공과금 수납(지방분 포함) ◆ 국제환 ◆ 외환거래 서비스 ◆ 해외 송금서비스 SWIFT(국제금융전 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구망 공동이용 ◆ 카드발급 대행 ◆ 증권계좌개설 대행 등

2. 우체국 예금의 장점

- ◆ 보편성
- ◆ 안전성 : 고객의 원금과 이자 전액보장(한도없음, 타금융기관은 5,000만원까지)
- ◆ 공익성 : 국가공익사업 지원(SOC 투자재원 조달 등). 수익성이 없음.
- ◆ 편리성 : 전국 2,800여개 우체국에서 취급

3. 등백우대 저축예금 MMDA

- ◆ 특징
 -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고수익상품
 - 계좌가입 수 제한이 없음
 - 예금액별로 금리를 차등지급함
- ◆ 이용조건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법인 및 단체
 - 최초입금액 : 법인·단체 5,000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

※통장개설 후에는 제한없음

- ◆ 이자계산
 - 매일 잔액별 이자계산(7일이상 경과분)
 - 이월변동시 변동된 날로부터 이월적용
 - 법인 : 각종 금융취급 수수료 면제(9종)
 - 개인 : 우대금리 지급 및 수수료 면제(15종)

4. 고객우대제도

	법인		개인	
	최우수고객	우수고객	최우수 고객 (VIP)	우수 고객 (Gold)
선정 기준	◆ 3개월 예금 연평균잔이 10억원 이상인 고객	◆ 3개월 예금 연평균잔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고객	◆ 평점이 100점 이상인 고객	◆ 평점 60점 이상 100점 미만인 고객
우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이체(즉시이체) ◆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 통상환발행 수수료 ◆ 현재고 증명 수수료 ◆ 거래내역조회 수수료 등 	◆ 각종 수수료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면제 -송금수수료(자행/타행) -전자금융이체(즉시이체) -자기앞 수표 추심료 및 발행수수료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통상환발행 수수료 -현재고증명 수수료 -거래내역조회 수수료 등 ◆ 우대금리지급 -6개월 이상(0.05%P) -1년이상(0.1%P) -2년이상(0.15%P) 	◆ 각종 수수료 50% 감면
서비스 기간	◆ 선정 월 익월부터 6개월간			

- ◆ 개인 우량고객 평점 산정기준
 - 3개월간 요구불예금 평잔고 : 1천만원당 20점
 - 3개월간 저축성예금 평잔고 : 1천만원당 10점
 -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 : 비율 80%초과 2점(차등적용)
 - 거래기간 : 240개월 초과 2점 (차등적용)
 - 3개월간 자동이체건수 15건 이상 2점
 - 증권거래계좌 이용여부 :2점
 - 3개월간 가계수표대월이자: 3만원당 1점 최대(25점)
 - 급여이체 여부 : 2점

5. 제휴업무 현황

- ◆ 창구망 공동이용 :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시티은행
- ◆ 증권계좌 개설 대행 : CJ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등 9개 기관
- ◆ 결제대금 수납대행 : 신한카드(구 LG카드), 삼성카드 등 9개 기관
- ◆ 해외송금서비스(SWIFT) : 신한은행
- ◆ 환전서비스 : 외환은행